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648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상장 법인 제외(차규근의원안)	3

I. 개요

1.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64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차규근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6. 2.
- (3) 회 부 일 : 2025. 6.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을 뿐,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가업의 승계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나 상장기업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고 이에 맞추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함께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상장법인 제외(차규근의원안)

현 행(상증세법)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 ○ 대상 -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u><신 설></u>	☐ 공제대상에서 상장법인 제외 ○ 대상 - (현행과 같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제외
현 행(조특법)	개 정 안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30조의6) ○ 대상 -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u><신 설></u>	☐ 과세특례 대상에서 상장법인 제외 ○ 대상 - (현행과 같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제외

* 차규근의원안 2025. 6. 2. 발의(의안번호 10647, 10648)

☐ 두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1)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함)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외하려는 것임.

-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간 축적된 기술·경영 노하우의 안정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²⁾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업상속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³⁾은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가액에서 10억원 공제 후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10%(12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하는 가업증여 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음.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금액·한도]

구분	요건 및 내용
대상 기업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공제 금액	가업상속재산의 100%
공제 한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300억원 2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600억원

[가업증여 과세특례 적용대상 및 내용·한도]

구분	요건 및 내용
대상 기업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내용	10%(6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
적용한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300억원 2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600억원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증여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2010년 이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1년에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었고, 그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22년 말 세법개정으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적용대상이 됨.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증여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업규모 연혁]

구분	2010년 이전	2011년	2013년	2014년	2022년	2023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만 가능	1500억원 이하	2천억원 이하	3천억원 미만	4천억원 미만	5천억원 미만

상속과 증여 간 형평성 차원에서 가업증여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 가업상속 공제 중심으로 검토함.

□ 상장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음.

첫째,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가업 상속인의 재력 부족으로 장기간 축적된 기술·경영 노하우가 승계되지 못하고 가업의 존속이 어렵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이 용이한 상장기업의 경우 상속인이 당해 기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은 비상장기업에 비해 낮은 측면이 있음.

일반적으로 상장기업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외부 감시,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이 비상장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이 있음.

둘째, 대체적으로 상장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해당하는데 이들 규모 큰 기업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가업상속공제 취지에 보다 부합하고,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음.

가업상속공제는 그 특혜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 함에도 규모가 큰 기업의 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가업상속공제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⁴⁾이 있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2014.12.)에서 사업용 자산의 무상취득에 대한 특권이 타당성 심사 없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넘어 확장되는 경우 이는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⁵⁾도 제기됨.

□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업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상장기업은 일반적으로 공개적 주식 거래를 통해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높은 유동성이 있으며, 기업의 신뢰도 제고 등의 장점이 있어, 외부 투자자 유치를 통한 사업 확장 등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기업공개는 필요한 핵심요소로 볼 수 있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비상장기업의 기업공개 유인을 낮출 수 있음.

둘째, 가업상속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상장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일률적으로 상장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게 되면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적합한 일부 상장기업의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유사한 업종·규모·업력의 기업이라도 상장 여부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이충희·최한수,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 완화 시도에 대한 비판”, 2019.5.14.

5) 유효림,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80p., 2024. 7. 9.

□ 참고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용 중인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독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주요국에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⁶⁾.

문 의 처
02)6788-5161

6) 최세경,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주요쟁점과 2022년 세제개편안의 시사점,